

제 294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 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(2026. 7. 23.)

# 조례 · 일반의안 검토보고서



## 산업건설위원회

[전문위원 전 병 준]



# 목 차
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 | 거창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안 전 총 괄 과            | 1  |
| 2 |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<br>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| 환 경 과                | 8  |
| 3 |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             | 농 업 소 득 과<br>체육시설사업소 | 13 |



# 거창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26. 7. 10.
- 나. 제 출 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26. 7. 10.

### 2. 제안이유

- 초대형 산불,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과 같은 대규모 복합 재난 발생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주민 대피 체계 수립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, 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을 정함(안 제1조~제3조)
- 나. 대피장소 지정 및 표지판 설치, 대피안내요원 지정을 정함(안 제4조~제6조)
- 다. 정보공개의 원칙, 대피명령 발령을 정함(안 제7조·제8조)
- 라. 대피 교육·훈련, 경비지원을 정함(안 제9조·제10조)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·제28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0조·제42조,
- 나. 예산조치: 2026년 예산 4천만원 확보

다.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

라. 기타사항

1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2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: 2026. 3. 4. ~ 3. 24.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3) 비용추계서: 미첨부사유서 붙임

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5) 경상남도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 제정 권고안 및 법제처  
자치법규의견제시 회신 반영

## 5. 검토의견

☐ 조례 제정의 필요성 : 필요

- 재난으로부터 거창군 거주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.

☐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: 해당없음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·제28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0조·제42조

☐ 재정부담 여부(예산조치사항) : 필요시

- 2026년 예산 4천만 원 확보

☐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: 해당없음

☐ 검토결과

○ 본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 및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 
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연 재난 및 사회재난의 위험성으로

부터 거창군민과 관내 체류하는 사람들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,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피 유도 및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

○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| 조 문               | 주 요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제1조(목적)           | 재난으로부터 거창군에 있는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대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| 조례 제정 목적           |
| 제2조(정의)           | 주민등, 재난, 안전취약계층, 대피장소, 대피명령 등 주요 용어 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위법 개념 준용          |
| 제3조(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) | 군수가 매년 재난 대피관리계획을 수립하며 대피지역, 대피인원, 대피장소, 정보공개, 교육·훈련 등을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난대비 기본계획          |
| 제4조(대피장소 지정)      | 대피 이동시간, 예상 인원, 안전취약계층 수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피장소 지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연계 |
| 제5조(대피장소 표지판 설치)  | 대피장소 위치, 관리부서, 연락처 등을 표시한 안내표지판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민 접근성 향상          |
| 제6조(대피안내요원 지정)    | 소속 공무원 등을 대피안내요원으로 지정하고 대피장소·대피로 안내 및 안전취약계층 대피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현장 대피 지원체계         |
| 제7조(정보공개의 원칙)     | 대피장소, 재해위험지역, 기타 대피정보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전 정보 제공           |
| 제8조(대피명령 발령)      |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피명령을 발령하고, 긴급 시 회의 생략 가능. 읍·면장은 긴급 대피 실시 후 군수에게 보고. 재난문자·사이렌 등으로 신속 전파 | 재난 대응 절차 규정        |
| 제9조(대피교육·훈련)      | 주민과 대피안내요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난 대응 역량 강화        |
| 제10조(경비지원)        | 주민의 자발적 대피 유도 및 재난대피 인식 확산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      |
| 부칙(시행일)           | 공포한 날부터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행 시기              |

## ○ 관련 법령 및 상위법 검토 결과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0조(대피명령)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 등에게 대피할 것을 군수가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대피명령 및 장소 지정 등은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며,
-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(조례)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, 전형적인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주민의 생명 및 안전 도모에 관한 조례 제정의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 ○ 조문별 검토 결과

- 안 제5조(대피장소 표지판 설치)에서 ‘설치할 수 있다’를 ‘설치하여야 한다’로 변경한다면 조례의 실효성이 더욱 담보될 수 있으며,
- 안 제8조제1항에서 대피명령 발령 주체가 군수이므로 대책본부 소집 표현을 생략하고 ‘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발령할 수 있다’로 문구를 바꾼다면 보다 간결해질 수 있으며,
- 안 제10조(경비지원)에서 ‘필요한 경비’를 ‘대피 및 구호에 필요한 경비’로 바꾼다면 무엇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예산 집행 근거가 더욱 명확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- 최근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, 2025년 영남지역 대형 산불과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‘사전대피’를 최우선 재난 대응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대피 체계를 조례로 정비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,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0조는 시장·군수에게 대피 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,
  - 어느 곳을 대피장소로 관리할 것인지
  - 누가 주민을 안내할 것인지
  - 안전취약계층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
  - 대피정보를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
  - 대피훈련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등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.
- 특히, 거창군은 산지가 많아 산사태 위험지역이 존재하고, 황강·위천 등 하천 주변 침수 위험이 있으며,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지역적 특성과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체계적 재난 대피 관리가 꼭 필요한 실정임.
- 다만, 그동안 조례 없이 상위법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만 의존하여 업무를 수행해 온 것에 대해 "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지 못했다."라는 아쉬움이 있음.

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■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951호, 2024. 1. 9., 타법개정]

**제28조(조례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### 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( 약칭: 재난안전법 )

[시행 2026. 6. 11.] [법률 제21421호, 2026. 3. 10., 타법개정]

**제40조(대피명령)**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·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·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2. 22., 2019. 12. 3.>

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12. 2. 22.>

[전문개정 2010. 6. 8.]

**제42조(강제대피조치)**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·자동차 등을 견인시킬 수 있다. <개정 2012. 2. 22., 2019. 12. 3.>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필

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<신설 2012. 2. 22.>

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 <신설 2012. 2. 22.>

[전문개정 2010. 6. 8.]

#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26. 7. 10.
- 나. 제 출 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26. 7. 10.

## 2. 제안이유

-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의 개정  
에 따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 등을 정비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법령 개정 사항 반영함(안 제4조·제5조)
  - 1)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⇒ 기후위기대응위원회
  - 2) 위원 위촉 시에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는  
근거 신설
- 나.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 등을 정함(안 제4조, 부칙 제2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: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2조
- 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의: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

라. 기타사항

1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2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: 2026. 4. 7.~ 4. 27.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3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## 5. 검토의견

☐ 조례 개정의 필요성 : 필요

- 법령 개정 사항 반영

☐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: 해당없음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·제28조

-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2조

☐ 재정부담 여부(예산조치사항) : 해당없음

☐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: 해당없음

☐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의 취지에 맞게 조례의 목적 규정을 정비하고, 위원회의 명칭을 법률과 일치시키며, 순환 경제 관련 정책 심의 기능을 추가하는 한편, 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사회계층의 참여를 보장하여 정책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써

○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| 조 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조(목적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| 시행령 삭제, 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변경        |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구 정비                |
| 제4조 제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| 상위법 명칭과 일치시킴                    |
| 제4조 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체 설치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2조에 따른 위원회 명시              |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.                   |
| 제4조제1항 제8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조례 심의 사항 추가        | 위원회 기능 통합으로 행정 효율성 증대 가능        |
| 제5조제3항제4호<br>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| 탄소중립 정책 전문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문가 위촉 시 다양한 사회계층 대표성 반영 의무 추가 | 주민참여 확대 취지가 바람직하나 실제운영 여부가 중요함. |

○ 안 제1조, 제4조에서는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2조(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)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법정 명칭인 ‘기후위기대응위원회’로 정비하는 것으로, 상위법령의 취지에 전적으로 부합하며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높이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
○ 안 제5조제3항제4호에서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아동, 청년, 여성, 장애인, 노동자, 농민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

반영을 의무화한 것은 기후위기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될 수 있다는 ‘기후정의’관점을 반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- 안 제4조 및 부칙 제2조에서는 위원회 심의 기능에 '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'에 관한 사항을 포함(안 제4조제1항제8호) 시키고, 부칙을 통해 관련 조례들을 일괄 개정하는 것은 유사·중복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행정의 낭비를 막는 효율적인 입법 조치이며,
- 탄소중립 정책과 자원순환(순환경제) 정책은 긴밀히 연계되어야 하므로, 하나의 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확보 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,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거창군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,
- 조례 개정에 따른 절차적·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■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951호, 2024. 1. 9., 타법개정]

**제28조(조례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### 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( 약칭: 탄소중립기본법 )

[시행 2026. 6. 2.] [법률 제21738호, 2026. 6. 2., 타법개정]

**제22조(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(이하 “지방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5. 11. 11.>

②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
③ 지방위원회의 구성,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, 청년, 여성, 장애인, 노동자, 농어민, 중소기업인,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3. 28., 2025. 11. 11.>

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4항(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13조제2항, 제1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·제4항에 따른 심의 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. <개정 2024. 10. 22.>

[제목개정 2025. 11. 11.]

##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26. 7. 10.
- 나. 제 출 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26. 7. 10.

## 2.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

### ① 서북부경남 거점APC 기자재 보관창고 신축사업

#### 1. 제안이유

- 가. 팔레트, 보관상자의 야외적재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로,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필요('24년 경남도 안전점검 지적사항)
- 나. 기자재 창고 신축으로 작업공간 확보, 위생환경 및 물류 동선 효율화

#### 2. 주요내용

##### 가. 사업개요

- 1) 사 업 명 : 서북부경남 거점APC 기자재 보관창고 신축사업
- 2) 사업위치 : 거창읍 대평리 1347, 서북부경남 거점APC
- 3) 사 업 비 : 1,200백만원(도 240, 군 960)
- 4) 사업기간 : 2026. 4. ~ 12.
- 5) 주요내용 : 기자재 보관창고 및 비가림시설 신축(2,000㎡)
  - 부지면적 37,263㎡(토지 소유자 : 거창군)
  - 80m(길이) × 25m(폭) × 11m(기둥높이) / 가설건축물(막구조)

나. 취득재산 세부내역 : 【책자 p.14】 참조

(단위:m<sup>2</sup>, 천원)

| 구분         | 재산<br>종별 | 재산의 표시          |    |       | 기준가격      | 취득<br>시기     | 취득<br>사유          | 용도<br>지역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|          | 소재지             | 지목 | 연면적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취득<br>(신축) | 건물       | 거창읍 대평리<br>1347 | 창고 | 2,000 | 1,200,000 | 2026.<br>12. | 기자재<br>보관창고<br>신축 | 일반<br>공업<br>지역 |

다. 추진경과

- 1) 2025. 8. : 경남도지사 방문 시 기자재 보관창고 신축사업 건의
- 2) 2026. 2. : 서북부경남 거점APC 기자재 보관창고 사업계획서 제출
- 3) 2026. 6. : 실시설계

라. 향후계획

- 1) 2026. 8. : 사업자 선정 및 착공
- 2) 2026. 12. : 사업 준공

마. 기대효과

- 1) 전국 5대 사과주산지의 안정적인 유통기반 조성과 물류 효율화 통해 농가소득 증대 기여
- 2) 보관상자, 팔레트 등 기자재 운영 보관 효율화로 안전사고 예방
  - \* 8톤 화물차 진입 가능 및 내부 팔레트 랙 설치로 보관 효율 증대
  - \* 보관상자 55,000개, 팔레트 500개, 철제팔레트 450개 적재 가능

3.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 : 【책자 p.15】 참조

4. 관계법령 : 【책자 p.17】 참조

가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, 제16조

나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제7조

다. 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

## 2. 마리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

### 1. 제안이유

- 마리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, 사유지 매입을 통한 규모 확장으로 이용 편의성 개선 및 시설 안정성 확보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사업개요

- 1) 사업명 : 마리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
- 2) 사업비 : 800백만원(군비)
- 3) 위치 :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101, 102
- 4) 사업기간 : 2026. 1. ~ 2027. 5.
- 5) 주요내용 : 파크골프장 9홀 조성 및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

#### 나. 취득재산 세부내역 : 【책자 p.22】 참조

(단위:㎡, 천원)

| 구분 | 재산<br>종별 | 재산의 표시             |    |        |        | 기준가격   | 취득<br>시기 | 취득<br>사유        | 용도<br>지역       |
|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   |          | 소재지                | 지목 | 면적     | 편입면적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계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| 2,601㎡ | 2,601㎡ | 31,819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취득 | 토지       | 거창군 마리면<br>월계리 101 | 답  | 1,610㎡ | 1,610㎡ | 21,413 | 26. 7.   | 파크<br>골프장<br>조성 | 계획<br>관리<br>지역 |
|    |          | 거창군 마리면<br>월계리 102 | 전  | 991㎡   | 991㎡   | 10,406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
#### 다. 추진경과

- 1) 2024. 8. ~ 12. : 마리면 파크골프장 부지 선정 검토  
→ 마리면 월계리 1276-31번지(국유지) 최종 결정
- 2) 2025. 4. ~ 11. : 지장물 보상협의 완료
- 3) 2026. 1. : 실시설계용역 착수
- 4) 2026. 2. ~ 3. : 부지 내 지장물(임목, 고철 등) 철거 완료
- 5) 2026. 4. 10. : 실시설계관련 주민간담회 개최  
→ 인근 사유지 2필지(마리면 월계리 101, 월계리 102) 매입을 통한  
파크골프장 면적 확장 건의
- 6) 2026. 5. 7. : 토지소유자 및 관계자에게 사전의견조회 및 절차안내

#### 라. 향후계획

- 1) 2026. 7. ~ 9. : 토지 손실보상협의

- 2) 2026. 7. :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(체육시설사업소→건설교통과)
- 3) 2026. 8. ~ 9. : 제2회 추경 확보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
- 4) 2026. 10. ~ : 사업 착공
- 5) 2027. 5. : 사업 준공

#### 마. 기대효과

- 1) 여유부지 확보로 코스 배치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간 충돌을 최소화하는 등 안정성 확보
- 2) 휴게공간(벤치, 그늘막 등) 확충으로 이용자 편의성 및 만족도 향상
- 3) 수목 식재 공간 확보를 통한 자연친화적 경기환경 조성 및 경관 개선

#### 3.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 : 【책자 p.23】 참조

#### 4. 관계법령 : 【책자 p.25】 참조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, 제16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
- 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

### 3. 검토의견

#### ① 서북부경남 거점APC 기자재 보관창고 신축사업의 건은

- 서북부경남 거점APC 내 팔레트와 보관 상자의 야외 적재로 안전사고 위험, 기자재 노후화, 작업공간 부족, 물류 동선 비효율 등의 문제가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, 경상남도 안전점검에서 개선을 권고받은 사항인 만큼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며,
- 기존 APC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토지 매입이 필요하지 않아 사업 추진의 효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.

- 다만, 다음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.
  - 가설막구조는 건축사양에 따라 편차가 큰데, 건축단가 m<sup>2</sup>당 475천 원으로 산정한 근거
  - 창고는 2,000m<sup>2</sup>인데 부지조성은 4,000m<sup>2</sup>를 계획한 이유
  - 막구조의 기대수명과 교체주기 등 향후 10~20년간 유지 관리에 있어 일반 철골조보다 유리한지에 대한 검토
  - 전기·통신·소방공사, 폐기물 처리비가 사업비에 포함된 것인지?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에 따르면 당해연도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먼저 받아야 하며 연도 중에 사업이 바뀌거나 긴급하게 재산을 취득·처분해야 할 사유가 생기면 회계연도 중에도 계획을 짜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- 본 사업은 건축물 신축이며 사업비 12억 원, 연면적 2,000 m<sup>2</sup>규모로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대상에 해당함.
- 다만, [1단계: 공유재산심의회 내부 심의] → [2단계: 지방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및 의결] → [3단계: 예산 반영 및 실제 취득·처분 집행] 순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,
- 이 사업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없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이미 사업비가 반영된 사항으로 명백한 사전 절차 누락에 해당됨.

- 이처럼 '선(先) 예산 편성, 후(後)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'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과 심의에 있어 각별한 업무 연찬이 필요해 보임.

## **2** **마리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**은

- 당초 국유지(월계리 1276-31)만을 활용하는 계획이었으나,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민간담회를 통해 사유지 매입이 추가된 사항으로
- 주민들의 확장 건의를 수용하여 시설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과 토지 취득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임.
- 취득 대상 토지의 규모는 2필지, 2,601㎡로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대상에 해당하며, 예산을 편성하기 전 계획을 제출하였으므로 절차상 문제는 없음.
- 다만,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  - 최초에는 국유지만으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, 지금 와서 사유지를 추가 매입하는 이유가 무조건적인 주민 건의 사항 반영은 아닌지?
  - 추가 부지가 없으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지?
  - 현재 설계와 추가 매입 후 설계의 차이

- 또한, 사업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  - 공사비 증액 630백만원 중 가설건축물 설치비가 230백만원으로 33.8%를 차지하고 있는데, 단순 이동식 콘테이너 형태인지, 영구 시설에 준하는 고사양 가설건축물인지?
  - 당초 실시설계비가 20백만원인데 추가로 20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은 과업구간 면적 증가 대비 과다 편성이 아닌지?
  
- 토지 취득을 통해 코스 배치의 효율성, 휴게시설 설치 공간 확보 및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등 일정 부분 사업효과가 기대되지만,
  
- 당초 국유지만을 활용하는 사업계획에서 추가 토지 매입으로 변경된 경위와 필요성, 사업비 증가 규모, 유지관리비 부담, 설계 변경의 불가피성 및 추가 부지 확보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이 요구됨.